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0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 강선우·강득구·고영인

김승원 • 문정복 • 박성준

서영교 • 서영석 • 송재호

이규민・이수진비・주철현

허종식 • 홍성국 • 황운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 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.

그런데,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) ① 학교 또는 시·도 교육행정 기관에 학교사회복지사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 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2조의2(학교사회복지사의 배
	치 등) ① 학교 또는 시·도
	교육행정기관에 학교사회복지
	사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
	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
	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이하
	<u>같다)를 둔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학교사회복지
	사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